

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48
----------	-----

2019년 4월 22일  
환경수자원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9년 3월 29일, 임종국 의원 외 15명
- 나. 회부일자 : 2019년 4월 3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 
(2019년 4월 22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 설명자: 임종국 의원]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는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,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제척·회피 사유에 “장애”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어 관련표현을 수정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골자

- 위원회 위원 제척·회피 사유에 “장애” 표현을 수정함(안 제14조제3항제1호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

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8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수석전문위원 : 김 선 희)

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본 조례 개정안은 “장애”라는 단어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 및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해 “장애”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도록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#### 1)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

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(차별금지)에 의하면 ‘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아니된다’라고 명시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2016년 2월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8조 또한 “위원이 신 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

불가능하게 된 경우”라는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“장기간의 심신쇠약”으로 개정할 바 있음.

## 2)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

- 2018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4차 회의를 통해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포함한 서울시 모든 조례 개정을 권고하였음.
- 동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에 ‘심신장애’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, ‘심신장애’라는 문구는 ‘장애’가 ‘직무수행’을 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음.
- 따라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‘장애’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임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8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제1호 중 “심신장애로”를 “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위원의 제척·회피 등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심신장애</u>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p> <p>2. ~ 3. (생략)</p>	<p>제14조(위원의 제척·회피 등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장기간의 심신쇠약</u>으로 ----- -----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